



: 2018-07-26

부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6가단347433 손해배상(기)

원 고 1. [REDACTED]

2. [REDACTED]

[REDACTED]

피 고 부산그린파워 주식회사

[REDACTED]

변 론 종 결 2018. 4. 19.

판 결 선 고 2018. 7. 5.

주 문

- 피고는, 원고 [REDACTED]에게 38,026,758원, 원고 [REDACTED]에게 1,000,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. 10. 25.부터 2018. 7. 5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

: 2018-07-26

2.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/4은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 [REDACTED]에게 53,711,540원, 원고 [REDACTED]에게 2,283,01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꼽 제1, 2, 4, 9, 15호증, 을 제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각 기재 및 사진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(1). 피고 회사는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74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인데, 2014년경부터 유기견 2마리(이하 '이 사건 개들'이라 한다)를 피고 회사 내에 키우면서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.

(2). 2016. 5. 29. 15:00경 이 사건 개들이 목줄을 하거나 피고 회사의 직원들의 관리, 감독 없이 피고 회사 밖으로 나왔다. 피고 회사의 인근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었는데 이 사건 개들은 자전거를 타고 그 곳을 지나던 원고 [REDACTED]에게 달려들어 원고 [REDACTED]이 이에 놀라 이를 피하면서 넘어졌고, 이로 인하여 원고 [REDACTED]은 8주간의 치



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 한다).

(3). 원고 [REDACTED]은 원고 [REDACTED]의 배우자이다.

2. 판단

가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1) 책임의 근거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회사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9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2) 책임의 제한

다만,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, 즉 피고 회사가 동물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들이 원고 [REDACTED]을 공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, 원고 [REDACTED]이 이 사건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,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,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 회사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,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, 피고 회사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70%로 제한한다.

나. 손해배상의 범위



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,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.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/12%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.

1) 일실이의

가) 인정사실

다음 없는 사실, 광 제3, 4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

(1) 생년월일, 성별

원고 [REDACTED] : [REDACTED] 생, 남자

(2) 소득 : 원고 [REDACTED]은 부산 강서구 송정동 소재 에디스상사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5년경에는 월 4,675,362원(연간 56,104,350원)의 급여를 받았다.

(3) 입원기간 : 원고 [REDACTED]은 2016. 5. 29.부터 2016. 5. 31.까지 3일간 부산 강서구 [REDACTED] 소재 [REDACTED] 병원에, 2016. 6. 28.부터 2016. 7. 15.까지 18일간 부산 강서구 [REDACTED] 소재 [REDACTED] 병원에, 2016. 7. 18.부터 2016. 7. 29.까지 12일간 부산 사하구 [REDACTED] 소재 [REDACTED] 재활병원에 각 입원하였다.

(4) 가동연한 :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

(5) 노동능력상실율(원고 [REDACTED])

-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6. 7. 29.까지 33일의 입원기간 : 입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율 100% 인정
- 2016. 7. 30.부터 가동연한인 2021. 3. 3.까지 :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후방십자



: 2018-07-26

인대 기능상실로 맥브라이드 장해율 표 슬관절-IV. 십자인대파열-I 노동능력상실율 25%에 해당하나, 위 장해율표는 중증도의 장해이므로 2/3을 적용하여, 노동능력상실율 16% 인정, 영구장해

나) 계산

입원기간 : 5,142,898원(= 4,675,362원 × 33/30일)

2016. 7. 30.부터 2021. 3. 3.까지 : 36,698,973원[= 4,675,362원 × 49.059(51.0465 - 1.9875) × 16%]

합계 : 41,841,871원(= 5,142,898원 + 36,698,973원)

2) 적극적 손해

가) 기왕치료비 및 약제비 : 4,972,800원

[인정근거] 갑 제5, 6호증의 각 기재

나) 보조구

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, 원고 [REDACTED] 은 후방십자인대 보조구 1개(400,000원)의 구입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. 4. 20.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366,412원으로 산정한다.

다) 철심제거 수술비

원고 [REDACTED]은,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하면서 수술한 철심의 제거를 위하여 수술이 필요하고, 그 수술비로 1,388,84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[REDACTED]에게 철심제거 수술의 필요성과



그 비용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오히려 위 신체감정결과 촉탁결과에 의하면, 원고 [REDACTED]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고 향후 치료가 불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원고 [REDACTED]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.

라) 신발 구입비

원고 [REDACTED]은,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[REDACTED]이 신고 있던 신발이 훼손되어 신발 구입비 244,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,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다(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의 경우,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원고 [REDACTED]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고 있던 신발에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훼손되었는지 여부와 그 교환가치의 감소액의 수액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 [REDACTED]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.

마) 간병비

원고 [REDACTED]은, 원고 [REDACTED]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2016. 6. 29.부터 3일간 원고 [REDACTED]이 원고 [REDACTED]을 간병하였으므로 간병비 283,014 원의 지급을 구하나, 이 법원의 [REDACTED]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 [REDACTED]이 원고 [REDACTED]으로부터 2016. 6. 29부터 3일간 개호를 받았거나, 원고 [REDACTED]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입원 기간 중 개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 [REDACTED]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.



3) 책임의 제한

계산 : 33,026,758원 [= 47,181,083원 (= 일실이익 41,841,871원 + 기왕치료비 4,972,800원 + 보조기 366,412원) × 70%]

4) 위자료

가) 참작사유

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,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.

나) 위자료 액수

원고 [REDACTED] : 5,000,000원

원고 [REDACTED] : 1,000,000원

다. 소결론

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[REDACTED]에게 38,026,758원 (= 33,026,758원 + 5,000,000원), 원고 [REDACTED]에게 1,000,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. 10. 25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. 7. 5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

: 2018-07-26

판사 임해지